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79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2
※ 참고자료	6
1. 국립공원공단 조직도	6
2. 국립공원공단 정관(안)	7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30일 김위상위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안은 2024년 12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사업·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관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확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단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

Ⅲ. 검토의견

1.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이사 정수를 국립공원공단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u>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u> 을 둔다. <u><신 설></u>	제5조(임원) ① ----- <u>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u> ② <u>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상임이사 및 이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의 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국립공원공단 정관」에는 상임이사로 경영기획이사, 자원보전이사 및 탐방·안전이사를 두도록 함²⁾.

「국립공원공단 직제」에 따르면 경영기획이사는 기획예산처·행정처·정보융합실과 환경사회투명경영혁신실·고객만족실의 업무를 관장하고, 자원보전이사는 자원보전처·환경협력처·해상해안보전실과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국립해양생태보전원·국가지질공원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며, 탐방·안전이사는 탐방시설처·재난안전처·생태디자인실과 일터안전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당시 4부·1실·13과(본부) 및 21사무소로 설립되었으나, 2025년 현재 6처·9실·18부(본부)와 4지역본부·31사무소·10탐방원·1연구원·2보전원·1교육원·1사무국의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³⁾,

조직 설립 이후 소관 사업 및 조직·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⁴⁾ 임원 조직인 상임이사 수는 3명으로 유지되어, 확대된 업무량과

1) 「국립공원공단법」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2) 「국립공원공단 정관」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상임이사로는 경영기획이사, 자원보전이사 및 탐방·안전이사를 둔다.

3) <참고자료 1. 국립공원공단 조직도>

4) 국립공원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예산은 1987년 23,044백만원이었으나, 2025년 440,273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인력(직제)은 1987년 503명에서 2025년 2,589명으로 확대되었음.

변화하는 환경에의 대응 등을 위해 임원 조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을 원활하게 재배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⁵⁾.

다만,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정수에 대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입법이 일부 유지되고 있는 점과 인력 운용에의 견제 유지 필요성 등도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⁶⁾⁷⁾.

- 5) 국립공원공단은 현행법에 따른 상임이사 3인을 정관에 따른 4인으로 하고, 증원되는 1인의 상임이사는 기존 ‘탐방·안전이사’를 탐방관리이사(가칭)와 안전관리이사(가칭)로 변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6) 참고로, ‘지방조직을 갖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공공기관’ 중 ‘상임이사 정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로는 「국가철도공단법」(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있고, ‘정관’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사례로는 「한국환경공단법」(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있음.
- 7)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임원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상임이사 1명을 증원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로 2026년 2억 1,700만원, 2030년 2억 5,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1억 7,300만원(연평균 2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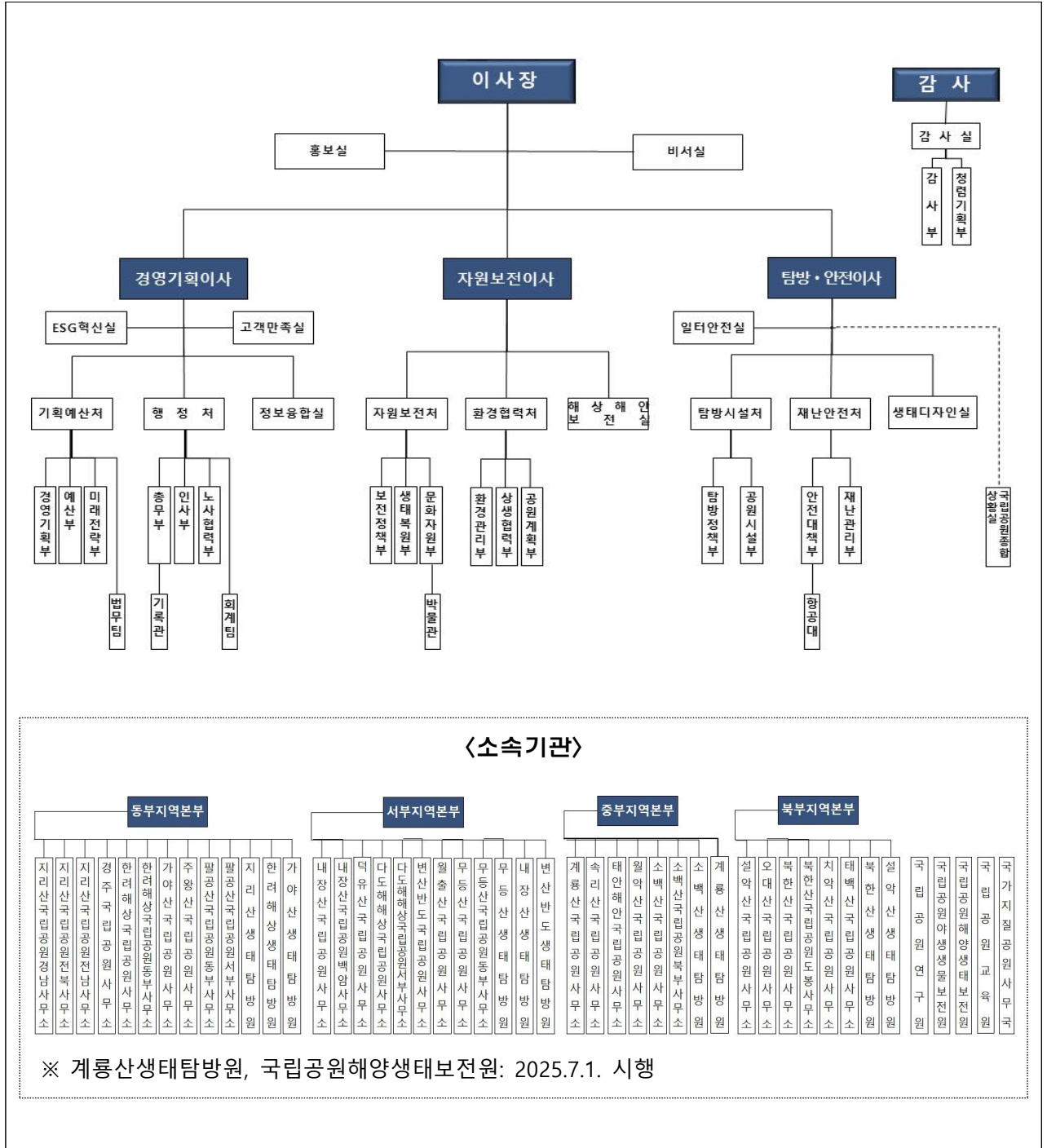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임 원(안 제5조)	217	226	234	243	253	1,173	23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국립공원공단 조직도



2. 국립공원공단 정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u>3인</u> 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7조(임원) ① ----- ----- <u>4인</u> 을 ----- ----- -----.
② 상임이사로는 경영기획이사, <u>자원보전이사</u> 및 <u>탐방·안전이사</u> 를 둔다.	② -----, <u>자원보전이사, 탐방관리이사(가칭) 및 안전관리이사(가칭)</u> -----.
③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고 한다)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조계종 소속 승려 중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 ----- ----- ----- ----- ----- ----- -----.

※ 출처: 환경부